



##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( 약칭: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)

[시행 2025. 1. 17.] [대통령령 제35209호, 2025. 1. 14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생활물류정책팀-총괄) 044-201-4156

국토교통부 (생활물류정책팀-택배서비스사업) 044-201-4153

국토교통부 (생활물류정책팀-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) 044-201-4158

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1조의2(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)** 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(이하 "물류취약지역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4. 7. 2.>

1.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
  2.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
  3.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
  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4. 16.]

**제2조(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)**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·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4. 4. 16.>

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"「항공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 <신설 2025. 1. 14.>

1. 화물의 집화·배송에 드론(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려는 경우: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「항공사업법」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을 등록할 것
  2. 화물의 집화·배송에 실외이동로봇(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려는 경우: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
-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 1. 14.>
1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2. 영업점, 별표 1에 따른 직영점,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·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
  3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  4.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